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 양 숙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영 의원 입니다.
「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였
으며, 집행부의 보존묘지 지정이 한건도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
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
조례에 규정하고,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
분묘를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내용은

안 제4조의 4항을 신설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는 것이며, 또한 안 제5조의 2제 1항 제3호 신설하여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은 보존묘지 제도를 통해 한국 근·현대사의 유명인사 묘역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, 인문학적 가치와 함께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